

「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(2차)」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24일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
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

## 「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(2차)」 공모 공고

### 1. 사업개요

- (사업명)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(2차)
- (사업목적)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를 집중 보급 하고 충전사업자 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브랜드 사업 추진
- (사업예산) 2,889억(급속 : 2,693억, 완속 : 196억)

구 분	지원분야	예산액 (억원)		
		완 속	급 속	총 계
한국자동차 환경협회	상용차(차고지, 물류센터), 이동거점(주유소, 고속도로 휴게소 등) 등	-	2,693	2,889
한국환경 공단	협회에서 구축을 지원하는 이외의 모든 시설	196 (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한함)		

※ 평가결과 및 접수물량에 따라 최종 사업 선정개수,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

- (공사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
- (사업유형) 지역 내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, 민간 투자, 충전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사업

**<우선 지원 대상>**

- 노후 공동주택,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생활공간 주변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- 기존 LPG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를 전기차 충전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, 복합스테이션 구축을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- 물류센터, 택배사 등 화물상용차 충전을 위한 사업
-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용도 차량 전환(어린이 통학차량, 택배차량)을 위해 전용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-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, 졸음쉼터 등 전기차 이동거점에 설치하는 사업
-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사업장, 기존 내연차 정비소·주유소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
**□ 지원대상**

- 지방자치단체(광역 또는 기초), 민간사업자(투자사업, 기업),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공동 컨소시엄
  - ※ 전기승합차 충전 컨소시엄에는 사업수행기관, 충전기 제조사·설치공사업체(사업수행기관과 동일한 경우 제외), 전기승합차 판매사 및 구매 법인(운수사 등)이 포함되어야 하며, 위 참여사 서로 간에는 「상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(상장회사로 국한하지 않으며, 비상장회사 등도 포함)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  - 「2025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(급속, 완속)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」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 자격 기준을 갖춘 충전사업자 등과 협력(컨소시엄, 5개사 이내)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,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
  -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.
    - 1)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(전기자동차충전사업)을 등록한 자
    - 2)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, 운영, 유지보수(정기점검, 긴급출동, 고장수리 등)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·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
- 3) 충전기 이용 현황(사용량, 회원관리, 고장접수 등)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,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(ev.or.kr)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
  - ※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충전시설이더라도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
- 4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및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(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-280호)」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,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
- 5)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(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)에 대하여 OCA(Open Charge Alliance)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(OCPP) 1.6 공인인증을 완료한 자
- 6)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
  - ※ 제안자가 충전소 설치 부지소유자가 아닌 경우, [별지 8호 서식] 충전기 설치 이용 승낙서 제출
  - ※ 충전 편의를 위해 1시간 이상 무료 주차(주차요금 미부과)가 가능 해야함
- 7)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‘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로밍서비스 EV이음’ 협약을 체결한 자

○ 지원대상은 “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”에 따른 “Ⅲ. 지원사업 선정 평가” 등에 따라 선정한다.

## 2. 충전기 설치 지원금액 및 기준

- (지원한도) 한 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
  - ※ 다만,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지원 수량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
- (지급방식) 보조금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며, 1차 보조금(선급금)은 배정보조금의 70% 범위 이내에서 지급
  - ※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(증권발급 조건 별도 안내)
- (지원금액) 「2025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(급속, 완속)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」에 따른다.

### 3. 준수사항

- 제안자는 전기자동차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(의무운영 기간 5년)
  - 제안자는 충전기의 이용요금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
  - 제안자는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·보수하고, 고장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
  - 제안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전시설 운영·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 -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 등에 따름
  -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 정산서류에 대하여 전문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  - 제안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운영 기간(5년) 동안,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'전기차 충전시설 안전·유지관리 교육'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
  - 제안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\*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
미준수 시 평가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\* 「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」의 [별지 제2호 서식] '사업계획서 작성지침' 참조

## 4. 추진절차 및 평가

### ○ 추진 절차



## 5. 신청방법

- (제출일) 2025년 6월 24일(화) ~ 7월 28일(월) 14:00 까지
- (제출방법)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
  - (접수경로) 누리집 → 구매 및 지원 → 공용 완속/급속 충전시설 공모 신청 → 브랜드 사업 공모 신청
- ① (상용차, 이동거점)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프라전략국 인프라구축팀
  - 인프라구축팀 (070-4027-1262, 070-4353-2294)
- ② (그 외)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 TF팀
  -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 TF팀 (032-590-9906(9905))

## 6. 기타사항

- 「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·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·운영 지침», 「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설치·운영 지침」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제재 처분함
-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선정 결과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을 통해 공지하며, 점수 및 배정보조금 등 공개하지 않고 사업명만 표기하여 공지함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
- 지원대상 선정 이후, 보조사업 관련 계약 체결은 「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문의처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내용에 따라 한국환경공단(goev@keco.or.kr)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(evbrand25@aea.or.kr) 이메일 문의

**【붙임】**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